

금융위 소관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2018. 7. 9.

# I 비영리법인의 현황

1. 비영리부문 동향
2. 문재인정부의 비영리부문 정책방향
3.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

## 비위 · 위법

‘새희망씨앗’ 불우아동 후원금  
128억 횡령 (연합뉴스 17.8월)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이사진  
개인 사금고로 전락 (JTBC, 17.11월)

성희롱, 배임의혹 등으로 얼룩진  
‘한국유니세프’ (뉴스타파, 18.3월)



## 투명성 · 건전성

## 영리법인



지배구조, 내부통제, 회계감사 등  
제도 개선

\* 유한회사 외부감사적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회계부정 제재 강화 등

##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에 비해  
도덕성 공익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여전히 회계·공시, 감사·감독 등  
미흡

## 사회적 경제

##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중



## ▶ 비영리법인의 사회적경제 사업증가



국정과제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시민공익위원회 설치)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공정성 강화



시민단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역할·기능 확대  
and  
책임과 투명성 강화

## 금융위 비영리법인

총 152개

('18. 6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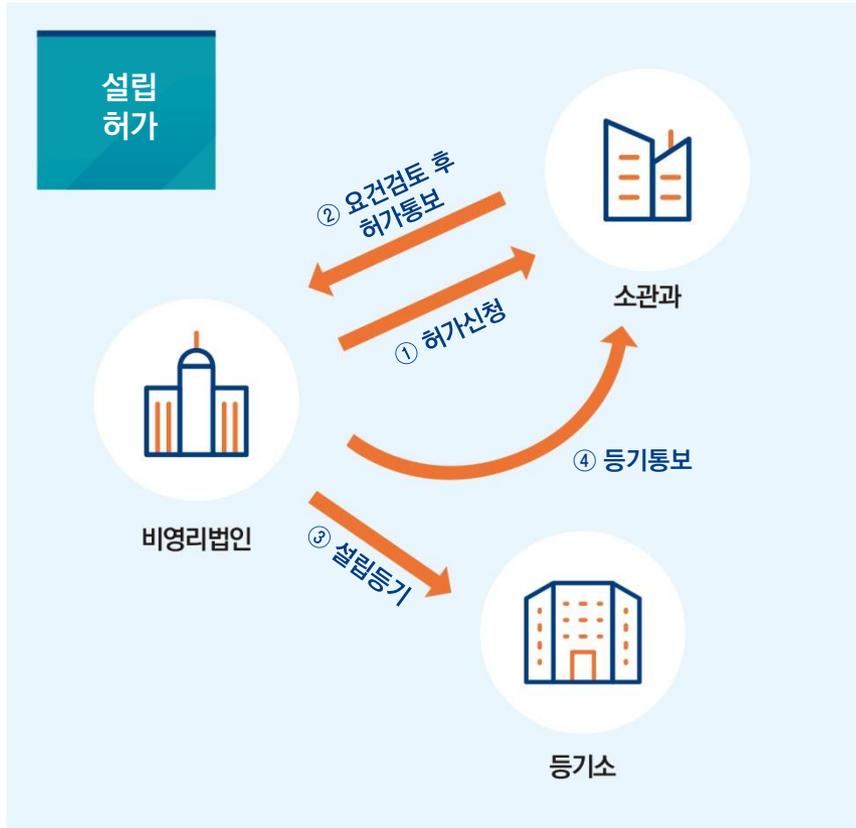
『민법 및 규칙』  
131개『개별법』  
20개『공익법인법』  
1개

- ▶ 설립목적 : 공공성, 업권간 교류 사회공헌, 학술연구로 구분
- ▶ 운영방식 : 회원 회비, 금융사 분담금 등으로 운영

- ▶ 업권별 자율규제 등 공적 업무 위임
- ▶ 대부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
- ▶ 개별법상 정관, 목적사업, 감독, 제재 등 별도규정

공공성(6개)	업권(19개)	사회(52개)	학술(5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인프라 구축</li> <li>• 산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산업 분야별 교류</li> <li>• 회비, 사업 수익으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취약 계층 지원이나 금융 소비자 교육</li> <li>• 모회사의 지원금, 금융회사분담금으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연구</li> <li>• 제도개선</li> </ul>

은행(4개)	보험(9개)	자본시장(5개)	기타(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금융</li> <li>• 여신금융</li> <li>• 신용협동</li> <li>• 상호저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li> <li>•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li> <li>• 보험계리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li> <li>• 코스닥</li> <li>• 코넥스</li> <li>• 공인회계사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협회</li> <li>•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li> </ul>



### 설립 이후

- 매년 회계결산 2개월 내에 예·결산 및 사업실적 계획서 제출
- 정관 변경 시 변경 허가신청

### 감독

- 필요 시 소관과에서 관계서류나 장부제출 요청
- 사무 재산상황 검사

### 감사

- 대형 비영리법인 주기적 종합감사
- 그 외 필요시 부분·종합감사 실시

### 회계 공시

- 통일된 회계기준 공시의무 없음
- 일부 법인만 상증세법상 공시의무적용

## Ⅱ 비영리법인 운영실태

1. 실태조사
2. 주요 문제점



## 비영리법인 체크리스트

법 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립허가 일 자	설립허가 변 호	제 호	

### ■ 법인사무 1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I. 민법 제7조	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2. 재산목록 미비지 및 부정기재 여부		
	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4. 파산신청 해태 등		
II. 목적사업의 이행	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3. 정관목적사업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III. 수익사업의 적정성	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 ■ 법인사무 2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추진실태
V. 임원 등	1. 임원·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2. 이사회외의 적법한 운영 여부		
VI. 사업계획의 이행 등	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VII. 정관변경 등	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 ■ 재산변동 등 회계감사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비 고	
I.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기본재산 확보 여부			
	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II. 기본재산 처분 여부	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 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III. 법인재산의 분배	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발행위 여부 등			
	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IV. 기타	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명 : ○○○○

대표자(대리인) ○ ○ ○ (인)

#### ■ 건의사항

####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 ○ (인)

## 대상

민법상 비영리법인  
(개별법 상 비영리법인 제외)

## 조사방법

- ① 비영리법인 체크리스트 자체점검
- ② 예·결산서류와 사업실적·계획서

## 조사내용

법인 사무, 목적 사업 이행여부  
수익사업 적정성, 재산변동 등

## Governance

▶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  
조직과 내부통제가 취약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형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합리성,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필요



## 역량과 전문성

## ▶ 중형 비영리법인

외부감사·공시 미비 등  
외부 통제나 감시기능 미흡

## ▶ 소형 비영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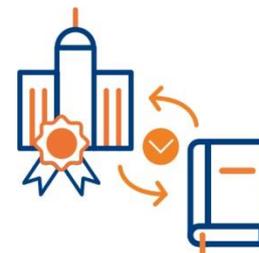
관련 규정 미숙지  
의무서류 부실작성

## ▶ 기타

소재지 불분명  
대표자 연락두절  
장기 미활동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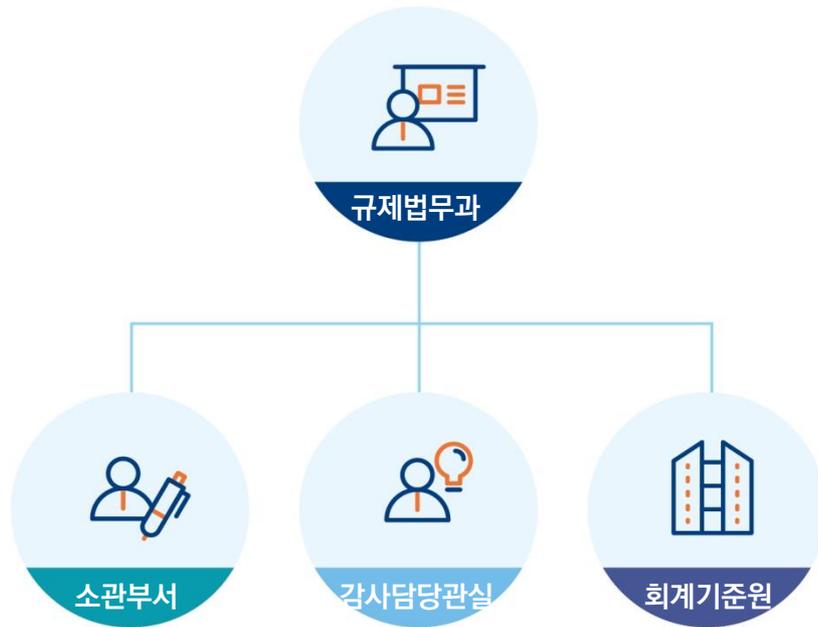
## 관리감독

## ▶ 비영리법인 매뉴얼 없음

▶ 설립허가 이후  
비영리법인 관련 중요  
정보 관리 부족

## Ⅲ 관리감독 개선방안

1. 감독시스템 구축
2. 건전성 · 투명성 제고
3. 정보관리 강화



〈비영리법인 현장조사 TF〉

## 비영리법인 현장조사 TF운영 범위

규제  
법무과

비영리법인 Control Tower  
자문, 행정지도, 권고 등 총괄

검사  
담당관실

위법·비위 등 적발·제재

소관  
부서

법인의 목적사업 적절성, 적합성 등  
검토

회계  
기준원

회계처리 적정성 등 자문

# 비영리법인 Self Check List

【서식 14】 비영리법인 Self-check list

영역	내용	준수 여부
1. 법인의 지속성	<p>&lt;법인 구성 및 유지&gt;</p> <p>▶ (사단법인) 최근 3년간 회원수가 10% 이상 감소되지 않는 등 적정 수준이상 유지하고 있는가?</p> <p>▶ (재단법인) 최근 3년간 손실없이 기본재산율 유지하고 있는가?</p> <p>사단법인은 회원이 구성의 요체가 되므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구성의 요체가되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p>	
	<p>▶ 이사 및 감사, 사무국 등은 정관에 맞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가?</p> <p>법원은 사람을 주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기구인 사무국은 주요계약, 자금이체 등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p>	
2. 법인의 운영의 적법성	<p>&lt;등기사항 보고&gt;</p> <p>▶ 임기 만료된 임원을 선출하고 변경등기 및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였는가?</p> <p>감사를 포함한 임원을 변경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임원변경(등기)보고를 하여야 함</p> <p>▶ 사무소를 이전하고 등기사항을 보고하였는가?</p> <p>정관상 사무소의 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 사무소 이전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관상 사무소의 소재지가 상세주소로 되어있다면 정관변경사항에 사무소를 이전해야 함</p>	
	<p>&lt;예결산서 제출&gt;</p> <p>▶ 매년 2월 28일까지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연도예산서를 총회에서 승인하고 제출하였는가?</p> <p>법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 28일 전까지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연도 예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p> <p>▶ 금융위원회의 예결산서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였는가?</p> <p>금융위원회는 법원의 예결산서에 대해 검토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원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주무관청의 요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p>	
3. 법인의 운영의 건전성	<p>&lt;총회(이사회) 운영의 적정성&gt;</p> <p>▶ 총회(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인원)들에게 인건에 대해 통지하였는가?</p> <p>법원은 총회(이사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원(인원)들에게 인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통지해야 함</p> <p>▶ 총회(이사회) 소집통지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지 않았는가?</p> <p>총회(이사회)의 단건은 사전에 통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음</p> <p>▶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있지는 않은가?</p> <p>사단법원의 총회와 이사회는 기능을 상이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고 만약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그 결의는 무효가 됨</p>	
	<p>&lt;회계관리&gt;</p> <p>▶ 법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목적사업과 그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수익사업 또한 법원의 사업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함</p> <p>▶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p> <p>법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목적사업과 그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수익사업 또한 법원의 사업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함</p> <p>▶ 법인의 회계장부 등은 적절히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가?</p> <p>법원의 회계장부는 수입사업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p>	
	<p>&lt;수익사업 운영의 건전성&gt;</p> <p>▶ 수익사업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가?</p> <p>비영리법원은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범의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함</p> <p>▶ 수익사업의 잔액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p> <p>수익사업의 잔액은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이 구성원에게 배부되어서는 안됨</p> <p>▶ 수익사업별 별도의 회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가?</p> <p>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신규 회계를 개설하고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고 회계 간 수입지출이 혼동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p>	

영역	내용	준수 여부
3. 법인의 운영의 건전성	<p>▶ 총회(이사회)개최시 참석자 서명부를 비치하고 있는가?</p> <p>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회(인원)의 참석확인이 필요하고, 회원(인원)은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음</p> <p>▶ 총회 회의록에는 참석이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가?</p> <p>사단법원의 총회 회의록은 참석이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p>	
	<p>&lt;수입의 적정성&gt;</p> <p>▶ (사단법인)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가?</p> <p>사단법원의 주요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되므로 법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함</p> <p>▶ (사단법인) 전체 수입 중 회비, 후원금, 보조금 등의 비중이 적정한가?</p> <p>사단법원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 사업비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비 등의 수입 현황을 관리해야 함</p>	
3. 법인의 운영의 건전성	<p>&lt;목적사업 수행&gt;</p> <p>▶ 법원의 전체 지출 등 목적사업 수행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p> <p>법원의 수입지출은 주로 목적사업 수행에 집행되어야 함</p> <p>▶ 사업이 법원의 목적 및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p> <p>법원의 사업은 법원을 설립한 취지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p>	
	<p>&lt;회계관리&gt;</p> <p>▶ 법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목적사업과 그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수익사업 또한 법원의 사업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함</p> <p>▶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가?</p> <p>법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목적사업과 그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며 수익사업 또한 법원의 사업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함</p> <p>▶ 법원의 회계장부 등은 적절히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가?</p> <p>법원의 회계장부는 수입사업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p>	
	<p>&lt;수익사업 운영의 건전성&gt;</p> <p>▶ 수익사업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가?</p> <p>비영리법원은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범의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함</p> <p>▶ 수익사업의 잔액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p> <p>수익사업의 잔액은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의 수익이 구성원에게 배부되어서는 안됨</p> <p>▶ 수익사업별 별도의 회계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가?</p> <p>수익사업을 수행할 경우 신규 회계를 개설하고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고 회계 간 수입지출이 혼동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p>	

- 비영리법인 자체점검시 활용
- 현장조사시에도 이를 기초 자료로 적용할 예정

	기존	개선
대형 비영리법인	주기적 종합감사	주기적 종합감사
중형 비영리법인	별도감사 없음 *소요발생 시 감사	
소형 비영리법인		좌동

## 비영리법인 구분기준

## 대형

- 연간 예산 100억 이상
- 상시근무 50명 이상
- 공적 업무 위탁

## 중형

- 연간 예산 1억~100억
- 상시근무 3명~50명

## 소형

- 연간 예산 1억 미만
- 상시근무 3명 미만

\* 이외 회원 수, 사회적 영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참고로 외교부의 경우 의무서류 미제출 등 휴면법인을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

## 내부감사 강화



- ▶ 매년 예결산서 제출시  
법인 내 감사인 감사보고서  
첨부  
(’18년 결산서류부터)

\* 소형 비영리법인은 감사인확인서 제출

## 회계전문성 강화



- ▶ 회계전문성이 있는 감사인 선임
- ▶ 중대형 비영리법인  
→ 정기적 외부감사 권고
- ▶ 회계 · 예결산 담당자 및  
내부감사인 전문성 제고



## 현행

공익법인 → 공익법인 회계기준('18년1월1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시의무공익법인\*'  
→ 결산서류공시, 다수법인 외부감사 有

\* 재산총액 5억원 이상, 총수입금액,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종교법인제외

이외의 민법상 일반 비영리법인 법인  
→ 별도 통일된 회계기준 없음



## 개선

금융위 소관 일반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 권고

\* 공익법인 등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제외



### 기존

- 법인설립 시 중요정보 갱신안함
- 정관 변경허가 시 일부 정보 파악



### 개선

허가증 기재 정보  
변경 시 신고 → 허가증 갱신  
(규칙 개정사항)

제 호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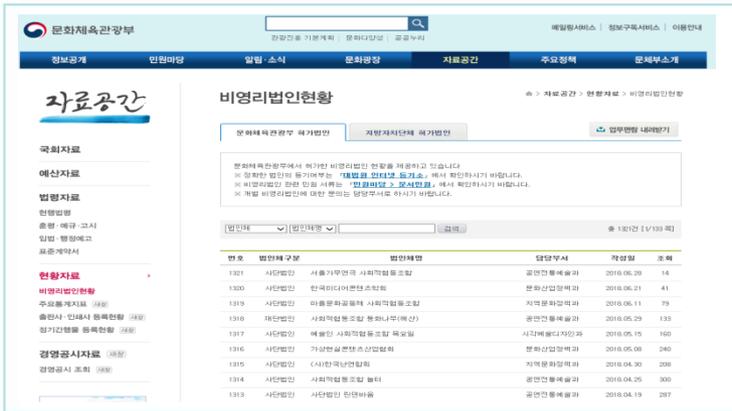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직인

타부처 예시



비영리법인  
공개정보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소관부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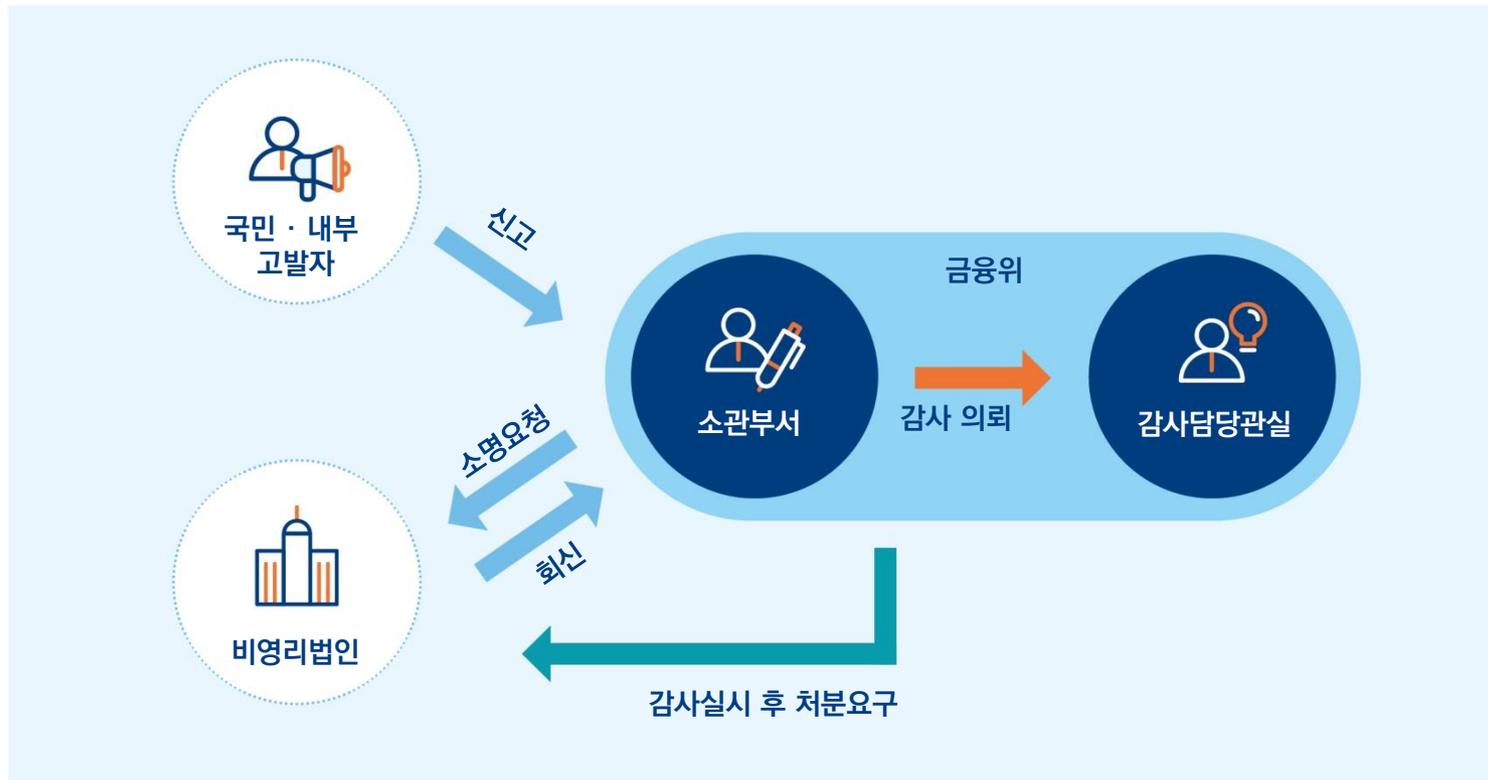
기존

- 일반국민 등이 정보공개청구 시에만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개선

- 금융위 홈페이지에 비영리법인 목록 사전정보공표
- 수사, 정기적으로 update
- \* 새로운 비영리법인 추가, 기존법인 정보변경



신고메일

fscgamsa@korea.kr

추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구축

1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시 첨부서류 참고서식 수록

<편람 P53~74>

- ▶ 발기인 인적사항
- ▶ 재산목록
- ▶ 사업계획서
-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 ▶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락서

2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조치사항

<편람 P17>

- ▶ 등기완료후 10일내로 등기사항 주무관청 보고
- ▶ 설립등기후 2개월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 ▶ 장부 및 서류비치

3

## 정관 예문 수록

<편람 P54>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하여 각각의 정관예문기재
- ▶ 정관작성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기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예문과 법인의정관을 비교하여 참고

4

## 허가심사시 검토사항

- ▶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신청시 소관과에서 심사·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적시
- ▶ 소관과 전문성 제고, 행정부담 완화
- ▶ 신청법인의 사전 점검 가능

**감사합니다.**